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변 종 오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재난안전산업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¹⁾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총 73,897개사이며 매출총액은 52조3,912억원 규모²⁾이나, 연간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영세한 사업체 비율이 34.2%(25,236개사)임. 또한 재난안전산업은 정부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따라 수요가 생기는 공공성이 큰 산업이기에, 산업 발전 초기에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산업 기반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함.³⁾ 이에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역 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선도 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차목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은 지방자치의 사무 범위에 해당됨.

1) 2021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2023.01.

2) 2021년 충청북도의 재난안전산업 사업체수 2,801개사 / 총 매출액 2,027,518백만원, 행안부 내부자료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참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21.4.26.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지난해 공포(2022.1.4.)하고 올해부터 시행(2023.1.5.)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또한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2023.4.24.)을 지원하며, 국가차원에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차원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3조는 재난안전산업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규모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각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7. 5.~`23. 7.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13조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을 토대로 충청북도 차원의 재난안전산업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